

1. 개정이유

「관세법」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된 승무원 휴대품의 면세 기준을 정하는 한편, 관세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정부용품에 대한 관세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며,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조정(안 제9조의3)

관세를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 부가되는 환급가산금의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함.

나. 관세 면제 정부용품의 면제 요건 명확화(안 제46조제2항)

정부이외의 자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정부용품 면세적용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와 이를 확인·발급하는 주체를 명확히 함.

다.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을 한시 확대(안 제46조제4항)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의 경우 30%에서 50%로 확대함.

라.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규정(안 제48조의3)

국제무역기와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을 구분하여 면세기준을 규정하고,

국제무역선 승무원의 경우 항행기간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17. ~ 3.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10호 중 “기용품”을 “항공기용품”으로 한다.

제7조의10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호”로, “산출방법에 관한 자료”를 “산출방법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9조의3 중 “18”을 “12”로 한다.

제9조의4의 제목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을 “(압류·매각의 유예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납처분 유예의”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로,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를 “압류 또는 매각 유예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납처분 유예의”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로,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압류·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처분 유예의”를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로, “체납처분 유예 취소”를 “압류·매각의 유예 취소”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건품”을 “건본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건품”을 “건본품”으로 한다.

18. 「국토안전관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9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상품이 아님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
2.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

제43조제9항제1호 중 “카나다”를 “캐나다”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건품”을 각각 “건본품”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가목 중 “50”을 “7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0”을 “50”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을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 ①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해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1.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과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여행자 또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제48조의3(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품) ①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면세범위(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의 가격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 1리터(ℓ) 이하 술 1병(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관세 면제는 3개월에 1회로 제한한다) 및 제48조제3항의 표에 따른 담배

2.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물품

가.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90달러 이하인 물품, 1리터(ℓ) 이하 술 1병(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관세 면제는 1개월에 1회로 제한한다) 및 제48조제3항의 표에 따른 담배

나.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180달러 이하인 물품, 1리터(ℓ) 이하 술 1병(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48조제3항의 표에 따른 담배

다. 1회 항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270달러 이하인 물품, 1리터(ℓ) 이하 술 1병(미화 400달러 이

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48조제3항의 표에 따른 담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선박·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은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직접”을 “몸에 직접 착용 또는”으로, “신변용품”을 “물품”으로 하고, 같은항제10호 중 “견품”을 “견본품”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손상감면신청)”을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신청)”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하며,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출입 횟수 기준	적용 무게 기준	수수료
국제무역선	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100원
국제무역기	1회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	1천2백원

제62조제2항제4호 중 “개항”을 “국제항”으로 한다.

제62조의2의 제목 “(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1호 중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관세정책관”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상용견품”을 “상업용 견본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수하인”을 “물품수신인”으로 한다.

제79조의4제1항제4호 중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을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7호부터 제5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57. 영 별표 3 제58호에 따른 무역보험 종류별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 별지 제64호서식

58. 영 별표 3 제59호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자료 : 별지 제65호서식

59. 영 별표 3 제60호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제65호서식 및 제6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세 등 납세증명서 Payment Certificate of Customs duties, etc.

(앞쪽)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접수일 Date of receipt	처리기간: 즉시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납세자 Taxpayer	상호(법인명) Name of Corporation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성명(대표자) Name(Name of representative)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Passport Number
	주소 Address	
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Certificate	대금수령 [] Receipt of payment	대금 지급자 Payer
	해외이주 [] Emigration	해외이주 허가번호 해외이주 허가일 년 월 일 Emigration Permission No. Date of the Permission yyyy mm dd
	그 밖의 목적 [] Others	
신청세관 Application Customs	증명서 신청부수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부 Copy(Copies)

징수유예/압류·매각의 유예의 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단위 :원 Unit :Won)

유예종류 Type of taxes suspended	유예기간 Period of taxes suspended	세액 Tax Amount

「관세법」 제1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의5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액 또는 압류·매각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116-3 of the Customs Act and the Article 14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년(yyyy) 월(mm) 일(dd)

신청인(납세자)
Applicant(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correct.

1. 증명서 유효기간: 년(yyyy) 월(mm) 일(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년(yyyy) 월(mm) 일(dd)

세 관 장 직인

Head of () Customs House



수 입 신 고 서

*처리기간 3일 (3쪽 중 제1쪽)

① 신고번호	② 신고일	③ 세관. 과	⑥ 입항일	⑦ 전자인보이스 제출번호
④ B/L(AWB) 번호	⑤ 화물관리번호	⑧ 반입일	⑨ 징수형태	
⑩ 신고인			⑮ 통관계획	⑲ 원산지증명서유무
⑪ 수입자			⑯ 신고구분	⑳ 가격신고서유무
⑫ 납세의무자 (통관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성명)			⑰ 거래구분	㉓ 국내도착항
⑬ 운송주선인			⑱ 종류	㉔ 운송형태
⑭ 해외거래처			㉕ 적출국	㉖ 선기명
⑲ 검사(반입)장소			㉗ Master B/L(AWB)	㉘ 운수기관부호

● 품명·규격

③⑩ 품 명	③② 상 표			
③① 거래품명				
③③ 모델·규격	③④ 성분	③⑤ 규격수량	③⑥ 단가	③⑦ 금액
③⑧ 품목번호	④① 순중량		④② 검사여부	④③ 사후확인기관
③⑨ 과세가격 (미화)	④④ 수량			
(원화)	④② 환급물량	④④ 원산지	④⑤ 특수세액근거	
④⑥ 수입요건확인 (발급서류명)				
④⑦ 세목	④⑧ 세율	④⑨ 감면율	④⑩ 세액	④⑪ 감면분납부호
			감면액	내국세목부호

⑤② 결제금액(인도조건-통화종류-금액-결제방법)	⑤⑤ 환 율		
⑤③ 총 과세가격 (미화)	⑤④ 운임	⑤⑦ 가산금액	⑤⑧ 납부(고지)서 번호
(원화)	⑤⑥ 보험료	⑤⑨ 공제금액	⑤⑩ 총 부가가치세과표

세 목	⑤⑨ 세 액	⑥① 신고인기재란	세관기재란		
관 세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개 소 세					
교 통 세					
주 육 세					
농 특 세					
부 가 세					
신고지연가산세					
미신고가산세					
⑥① 총 세액합계	담당자			접수일시	수리일자

첨부서류 Attachments	신청인 제출서류 Document to be submitted by applicant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수수료 Fee 없음 Free
	해외이주 허가 통지서 사본 1부 (해외이주허가권 발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Copy of Emigration Permission Notification (Applicable only to the applicant for residence passport)	사업자등록증 1부 (개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 Taxpayer's Identification (Applicable only to non-corporations)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Regarding the handling of this matter, I hereby agree that the official in charge may confirm the above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through the co-use of administrative according the Article 36-1 of 「E-Government Act」. * Document to be submitted in case the following matter is not agreeable.

납세자 (서명 또는 인)
Taxpayer (Signature or Stamp)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표시란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 ① 신고번호: 신고자 부호, 연도 및 신고서 작성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② 신고일: 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 ③ 세관.과: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통관지 세관부호 및 과부호를 적습니다.
- ④ B/L(AMB) 번호: 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MB) 번호를 적고, 혼재화물일 경우에는 House 선하증권 번호를 적습니다.
- ⑤ 화물관리번호: 적재화물목록심의 화물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⑥ 입항일자: 입항일자를 적고, 출항 전이거나 입항 전 신고인 경우에는 입항예정일자를 적습니다.
- ⑦ 전자인보이스 제출번호: 상업송품장(Invoice)을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번호를 적습니다.
- ⑧ 반입일: 수입신고시 장치된 장치장소의 반입일자를 적습니다.
- ⑨ 징수형태: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사전납부, 사후납부, 월별납부 등 납세신고세역의 징수형태부호를 적습니다.
- ⑩ 신고인: 신고인 상호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⑪ 수입자: 수입자 상호와 성명, 통관고유부호, 납세의무자 동일여부(동일한 경우: A, 상이한 경우: B)를 적습니다.
- ⑫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관련사항을 적습니다.
- ⑬ 운송수신인: 화물운송 수신인(포워더) 상호 및 부호를 적습니다.
- ⑭ 해외거래처: 해외거래처 상호, 국가, 부호 등 관련사항을 적습니다.
- ⑮ 통관계획: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 장치후신고 등 통관계획부호를 적습니다.
- ⑯ 신고구분: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일반 및 간이신고여부 등 수입신고구분부호를 적습니다.
- ⑰ 거래구분: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일반수입, 수탁가공무역 등 수입거래구분부호를 적습니다.
- ⑱ 종류: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내수용,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종류부호를 적습니다.
- ⑲ 원산지증명서 유무: 「관세법」 제2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를 적습니다.
- ⑳ 가격신고서 유무: 「관세법」 제27조에 따라 가격신고 제출여부를 적습니다.
- ㉑ 총 중량: 신고서 전체 신고물품의 총 중량(포장용기를 포함하여 반복사용 운반용기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 ㉒ 총 포장개수: 신고서 전체 신고물품의 외포장개수 및 포장종류를 적습니다.
- ㉓ 국내도착항: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도착항(공항 및 항구) 부호를 적습니다.
- ㉔ 운송형태: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운송수단 및 운송용기 부호를 적습니다.
- ㉕ 적출국: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신고물품의 해외산적국가 부호를 적습니다.
- ㉖ 선기명: 수입물품을 적재하여 국내로 도착한 선박(항공기) 및 국적부호를 적습니다.
- ㉗ Master B/L(AMB): 선사 또는 항공사가 발행한 Master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를 적습니다.
- ㉘ 운수기관부호: 세관에 신고된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 부호를 적습니다.
- ㉙ 검사(반입)장소: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반입할 보세구역부호를 적습니다.
- ㉚ 품명: 해당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 ㉛ 거래품명: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적히는 품명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 ㉜ 상표: 관세청에 등록된 대표상표코드 및 상표명을 적습니다.
- ㉝ 모델·규격: 세관심사에 필요한 모델 및 규격사항 등을 적습니다.
- ㉞ 성분: 세관심사에 필요한 성분 및 함량 등을 적습니다.
- ㉟ 규격수량: 해당 품목의 모델·규격별 수량을 적습니다.
- ㊱ 단가: 해당 품목의 모델·규격별 단가를 결재통화 단위로 적습니다.
- ㊲ 금액: 해당 품목의 모델·규격별 금액을 결재통화 단위로 적습니다.
- ㊳ 품목번호: 관세율표에 기재된 HS10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간이세율 적용대상인 경우 간이세율 코드를 3단위로 적습니다.
- ㊴ 과세가격: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기준으로 가격을 미화(US\$) 및 원화로 적습니다.
- ㊵ 순중량: 품목단위로 물품의 포장용기를 제외한 중량을 적습니다.
- ㊶ 수량: 품목단위로 관세율표에 따른 수량단위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 ㊷ 환급물량: 관세환급 소요량계산시 실제 사용하는 단위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 ㊸ 사후확인기관: 수입물품이 사후확인대상인 경우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수입요건확인기관의 부호를 적습니다.
- ㊹ 원산지: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원산지 국가부호, 결정기준, 표시유무, 표시방법 및 표시면제유무를 부호로 적습니다.
- ㊺ 특수세역구분: 주정인 경우 알콜도수(주세), 분당으로 계산되는 총량세의 경우 란별 총분수(관세_총량세), 귀금속 등 기준가격 초과과세(개발소비세) 등을 적습니다.
- ㊻ 수입요건확인: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관련 요건신고서 구분부호, 요건승인번호, 발급서류명, 발급일자, 법령부호를 적습니다.
- ㊼ 세목: 품목의 관세와 각종 내국세의 종류를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 ㊽ 세율: 품목의 세종별로 세율구분과 세율을 적습니다.
- ㊾ 감면율: 품목의 해당세목의 감면율을 적습니다. 다만, 내국세의 경우 내국세목부호란에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내국세 세목부호를 적습니다.
- ㊿ 세액: 각 품목별 해당 세액을 적습니다.
1. 감면분담부호: 감면분담부호 및 감면액을 적고, 관세감면액은 ()에 적습니다.
2. 결재금액: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인도조건, 통화종류, 결재금액 및 결재방법을 적습니다.
3. 총 과세가격: 품목별 전체 과세가격의 합계를 적습니다.
4. 운임: 실제 지급한 운임을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5. 환율: 5. 항목의 통화종류에 대한 관세청 고시환율을 적습니다.
6. 보험료: 실제 지급한 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7. 가산금액: 품목 전체에 영향을 미친 가산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8. 공제금액: 품목 전체에 영향을 미친 공제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9. 세액: 세종별 세액합계를 적습니다.
10. 신고인기재란: 신고인(관세사 등)이 신고서에 표시하려는 사항이나 세관에 제공하는 정보를 통계부호표를 참조하여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277조에 따라 국가관세총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으로 전자서명을 첨부하여 전자문서에 의해 신고할 경우 신고인서명 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1. 총 세액합계: 총 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12. 총 부가가치세과표: 총 품목전체의 부가가치세 과세과표 및 면세과표를 적습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송품장 2. 가격신고서 3. 신하증권부분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부분 4. 포장명세서(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만 제출합니다) 6.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신고수리 전 구비서류(전산확인인 가능한 물품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 물품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원(국제우편물감이 통관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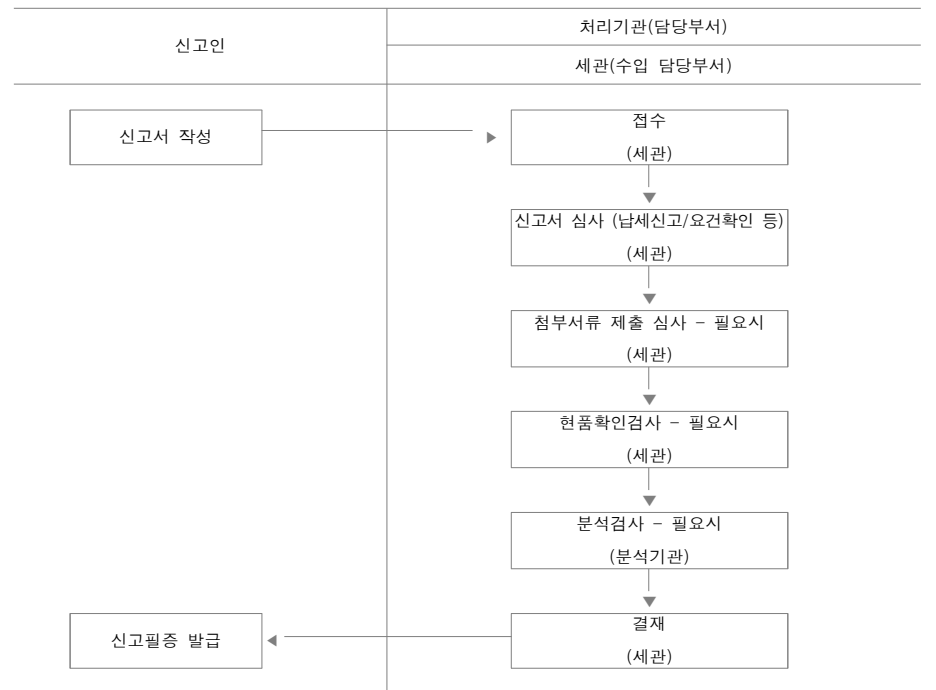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압류·매각 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	------	---------

납 세 자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 청 내 용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세액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독촉기한)	관세	내국세	계	관세	내국세	계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분납금액	관세	내국세
1회					
2회					
3회					

「관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2. 담보제공서	없 음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압류·매각의 유예(거부) 통지서**

귀하(귀사)의 압류·매각의 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관세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5항).

인 적 사 항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신 청 일		유예 여부			
유예 (거부) 사유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관세	내국세	계	
압류·매각의 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 납 금 액 및 횟 수 (단위: 원)					
횟 수	납부서 번호	납부기한	관세	내국세	계
계					

끝.

발 신 명 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관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관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
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라. (생략)
③ (생략)
제4조의3(운임 등의 결정) ① (생
략)
② 영 제20조제3항에서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물품을 말한다.
1. ~ 9. (생략)
10. 항공사가 자기 소유인 운송
수단으로 운송하여 반입하는
기용품과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받
은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
11.·12. (생략)
③·④ (생략)
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
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
사) ①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
호의 서류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법률」 제16조제1항-----

라.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운임 등의 결정) ① (현
행과 같음)
② -----

1. ~ 9. (현행과 같음)
10. -----

항공기용품-----

11.·1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10(특수관계자간 거래물
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
사) ① -----

신청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과 관련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
을 수 있다.
1. (생략)
2.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거래
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
무제표, 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를 포함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
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에 관한 자료
3.·4. (생략)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
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
류
6. ~ 8. (생략)
②·③ (생략)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제2항에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
율”이란 연 1천분의 18을 말한
다.
제9조의4(채납처분 유예의 신청

1. (현행과 같음)
2.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3
호----- 산출방법
신고서
3.·4. (현행과 같음)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 제14조-----

6.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3(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

----- 12-----

제9조의4(압류·매각의 유예 신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채납처분 유예의 신청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채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4항 따른 채납처분 유예의 통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납처분 유예 신청에 대한 거부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채납처분 유예(거부)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5항에 따른 채납처분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채납처분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 (생 략)
3. 부분품(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원재료 및 견본품

등) ① -----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
----- 압류 또는 매각 유예 신청서-----
--.

② -----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
-----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
----- 압류·매각의 유예-----
-----.

③ -----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취소 -----
----- 압류·매각의 유예 취소 -----.

제37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 ①-----

-----.

1. 2. (현행과 같음)
3. -----

----- 견본품

②법 제90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7. (생 략)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
19. ~ 33. (생 략)

③ (생 략)
④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시약 및 견본품
3. 4. (생 략)
- ⑤ (생 략)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① (생 략)

②법 제9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당해 수요기관이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 ~ 17. (현행과 같음)
18. 「국토안전관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
19. ~ 3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 견본품
3. 4.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상품이 아님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

	<p>2.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p>
<p>③ (생략)</p> <p>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 ⑧ (생략)</p> <p>⑨법 제93조제1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캐나다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하는 시·에스·에이(C.S.A)증표</p> <p>2. ~ 9. (생략)</p> <p>⑩·⑪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3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 ① ~ ⑧ (현행과 같음)</p> <p>⑨----- -----.</p> <p>1. <u>캐나다</u> ----- -----</p> <p>2. ~ 9. (현행과 같음)</p> <p>⑩·⑪ (현행과 같음)</p>
<p>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u>견본품</u>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p> <p>2. (생략)</p>	<p>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 -----.</p> <p>1. ----- ----- ----- <u>견본품</u>----- -----</p> <p>2. (현행과 같음)</p>

<p>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u>견본품</u>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p> <p>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u>견본품</u>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p>	<p>3. ----- ----- <u>견본품</u> ----- -----</p> <p>4. ----- ----- <u>견본품</u> ----- -----</p>
<p>② (생략)</p> <p>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삭제</p> <p>② (생략)</p> <p>③ 삭제</p> <p>④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p> <p>1. 1의2. 삭제</p> <p>2.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p> <p>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p> <p>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p> <p>② (현행과 같음)</p> <p>④ ----- -----.</p> <p>2. ----- ----- -----</p> <p>가. ----- ----- ----- ----- <u>70</u> ----- -----</p> <p>나. ----- ----- -----</p>

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 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① (생략)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일 것

2.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기본면세범위”라 한다)로 하고,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

----- 50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① (현행과 같음)

1.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2. ~ 4. (현행과 같음)

② -----
----- 제1항
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제1항제3호

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생략)

④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

③ (현행과 같음)

<삭제>

· 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1.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

(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⑥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과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여행자 또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⑦법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은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선박·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신 설>

제48조의2(관세가 면제되는 이사
물품) ①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
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외국
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
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
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
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
석·진주·별갑·산호·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
외한다.

1.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
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
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
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
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
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
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
(조립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
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
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
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일 것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
(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
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
는 물품일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도 불구하고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신 설>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송품과 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 중 별도로 수입하는 물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여행자 또는 입국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제48조의3(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품) ① 법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면세범위(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의 가격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 1리터(ℓ) 이하 술 1병(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관세 면제는 3개월에 1회로 제한한다) 및 제48조제3항의 표에 따른 담배
2.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물품가.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90달러 이하인 물품, 1리터(ℓ) 이하 술 1병(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관세 면제는 1개월에 1회로 제한한다) 및 제48조제3항의 표에 따른 담배
나.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180달러 이하인 물품, 1리터(ℓ) 이

하 술 1병(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48조제3항의 표에 따른 담배

다. 1회 항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270달러 이하인 물품, 1리터(ℓ) 이하 술 1병(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48조제3항의 표에 따른 담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선박·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은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1. 2. (현행과 같음)

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신변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4. ~ 9. (생략)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건품

11. ~ 23. (생략)

② (생략)

제55조(손상감면신청) (생략)

제62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①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되, 산정된 금액이 1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구분	출입 횟수 기준	적용 무게 기준	수수료
외국무역선	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100원
외국무역기	1회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	1천2백원

3. -----
----- 물에 직접 착용 또는 ----- 물품.

4. ~ 9. (현행과 같음)

10. -----
----- 건본품

11. ~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5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신청) (현행과 같음)

제62조(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① -----
----- 국제항 -----

구분	출입 횟수 기준	적용 무게 기준	수수료
국제무역선	1회	해당 선박의 순톤수 1톤	100원
국제무역기	1회	해당 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	1천2백원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허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개항의 협소 등 입항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입항하는 경우

③ (생략)

제62조의2(적하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생략)

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4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2. (생략)
- ②·③ (생략)

제79조의2(택송품의 특별통관)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

②-----

1. ~ 3. (현행과 같음)
4. 국제항-----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 (현행과 같음)

제77조의4(무역원활화 위원회의 구성) ① -----

1. ----- 관세정책관
2.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9조의2(택송품의 특별통관) ① -----

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건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4. 수하인의 통관고유번호
5. (생략)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법 제264조의2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영 제263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 3. (생략)
4. 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5. ~ 56. (생략)

<신 설>

----- 상업용 견본품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물품수신인-----
5. (현행과 같음)

제79조의4(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

5. ~ 56. (현행과 같음)
57. 영 별표 3 제58호에 따른 무역보험 종류별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자료: 별지 제64호서

<p><신 설></p>	<p>식 58. 영 별표 3 제59호에 따른 치 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요양급여비용 의 산정자료 : 별지 제65호서 식</p>
<p><신 설></p>	<p>59. 영 별표 3 제60호에 따른 치 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 : 별지 제66호서식</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